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 제도로부터 배운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

- 옵트 아웃(**Opt-out**)으로 불법 억제 기능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 옵트 아웃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없으므로, 옵트 아웃 도입이 가능하다.
- 수십년의 금지청구소송과 단체소송의 경험을 쌓은 소비자 단체가 없으므로, 소비자 단체 독점형은 충분한 인프라가 될 수 없다.
- 우리나라의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집단소송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우리나라에 집단소송제도는 과연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며, 우리는 어느 나라의 제도를 이정표 삼아 논의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세계 각국의 집단구제 제도를 조사하여 팩트북(**Fact Book**)으로 발표합니다. 이 팩트북은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구제 제도란 무엇인가?

집단구제 제도(**Collective Redress**)란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여러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소송 등을 제기하여 일괄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영미권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이나 유럽 등의 대표 소송(**Representative Action**)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단구제 제도에는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이나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소비자 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집단구제 제도가 필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집단구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해지고, 그 중요성이 커진 이유는 현대 경제와 기술의 구조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첫째, 대량 생산과 대량 유통의 보편화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글로벌화·고도화될수록, 동일한 상품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해 다수가 동종의 피해를 입는 일은 필연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 둘째, 위법행위 입증의 어려움 심화입니다.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제조물이나 의약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일반 피해자가 그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문가조차 그 내막을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셋째, 디지털화와 플랫폼화에 따른 가속화입니다. 최근 급성장한 구독 경제와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확장은, 일상 속에서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순식간에 양산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디지털화가 진전될수록 집단구제 제도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은 선진 국가일수록 집단구제 제도는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절실히 집니다. 세계적 수준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이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가?

집단구제 제도가 도입되고,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첫째, 사법 접근성 향상과 실질적 권리 회복입니다. 이 제도는 서류상의 권리를 넘어 '진실로 권리를 회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플랫폼 이용, 개인정보 침해 및 대규모 생산자와의 분쟁은 물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빅테크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거래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 및 보험, 기업 간 담합(카르텔),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 행위, 차별, 구독 서비스,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와 입점업체 등 소위 갑질과 불공정이 만성화된 온갖 영역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집단 구제 제도는 국가 기관의 행정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과 시장 스스로 나서서 불법행위를 시정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끊임 없이 담합을 하고, 갑질을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적발해도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이익을 보유했을 수 있다면 불법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셋째, 사법 제도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수많은 개별 소송으로 낭비될 법원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단일 절차로 묶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모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넷째, 피고(기업)를 위한 완전한 화해(**Global Settlement**)입니다. 집단 구제 제도는 피고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소송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끝없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개별 소송의 리스크에 시달리는 대신, 한 번의 절차나 합의로 분쟁을 영구적이고 완전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한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화된 경제와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특징은 집단구제 제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1.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및 자영업 비율이 매우 높음

- 자영업자 비중: 한국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약 20%대 중후반(과거 28%대에서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 이상 유지)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평균 10%~15% 내외)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 프랜차이즈 팽창: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 현재 1만 개를 훌쩍 넘어섰고, 소속 가맹점 수만 수십만 개에 달합니다.
- 문제점: 취업 시장 한파로 생계형 창업이 몰리다 보니, 본사의 관리 역량이 부족한 부실 가맹본부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맹점주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2. 대기업의 독점적 행태와 중소기업 및 소비자와 전 사회의 피해

- 적발 건수 및 과징금 비율: 매년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 중 '부당한 공동행위'의 건수는 전체 사건의 10% 미만이지만, 부과되는 총 과징금액의 80~90% 이상이 담합 사건에서 나옵니다.

- 소비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피해: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밀가루, 전분, 철근 등)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 남용으로 계약 상대방 또는 하도급 단계의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 하도급법 위반 집중: 실제 공정위 조치 건수를 보면, 전체 제재 건수 중 '하도급법 위반'이 가장 큰 비중(매년 수천 건 접수, 전체 제재의 약 30~4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원청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대금 미지급 등 중소기업 대상 불법 행위가 만연함을 시사합니다.

3. 프랜차이즈 및 틈새 산업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건 분포

-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갑질' 지표는 최근 들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 급증: 공정위의 2024년도(최근)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무려 55%가 본부로부터 불공정 행위(갑질)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과거 30%대에서 급증한 수치입니다.
- 주요 갑질 유형: 매출액 및 수익률 정보 부풀리기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광고비 및 판촉비 부당 전가 (동의 없는 비용 떠넘기기),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및 필수품목 고가 강매(마진 붙이기)
- 폐업 및 위약금 분쟁: 불황이 길어지면서 가맹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되는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 건수도 매년 20~30%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4. 빅테크 독과점 및 금융 산업의 지배력 집중도

- 빅테크 시장집중도: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검색, 메신저, 이커머스, 배달 시장에서 각각 1개사 점유율 50% 혹은 상위 3사 점유율 75%를 훌쩍 넘는 압도적 지배력을 보입니다. 이들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방해)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 금융 산업의 카르텔적 구조: 한국의 은행 산업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예금·대출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는 철저한 과점 체제(CR4 집중도 매우 높음)입니다. 최근 공정위가 이들 은행이 LTV(담보인정비율) 정보를 교환하여 시장 경쟁을 제한한 이른바 '정보교환 담합'에 2,7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들의 독과점적 지위가 금융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의 집단소송 현황은 어떨까?

오늘날 전세계 각국은 집단 구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OECD 38개 회원국을 보면, 한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회원국에 집단 구제 제도나 집단 구제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 IMF 기준 GDP 100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본다면, 대다수의 국가에서 집단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¹

¹ 100위권 국가 중에서 집단구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 미국 , 2. 중국 , 3. 독일 , 4. 일본 , 5. 인도 , 6. 영국 , 7. 프랑스 , 8. 이탈리아 , 9. 러시아 , 10. 캐나다 , 11. 브라질 , 12. 스페인 , 13. 멕시코 , 14. 대한민국 , 15. 호주 , 16. 튀르키예 , 17. 인도네시아 , 18. 네덜란드 , 19. 사우디아라비아 , 20. 폴란드 , 21. 스위스 , 22. 대만 , 23. 벨기에 , 24. 아일랜드 , 25. 아르헨티나 , 26. 스웨덴 , 27. 이스라엘 , 28. 싱가포르 , 29. 아랍에미리트 , 30. 오스트리아 , 31. 태국 , 32. 노르웨이 , 33. 필리핀 , 34. 베트남 , 35. 방글라데시 , 36. 말레이시아 , 37. 덴마크 , 38. 콜롬비아 , 39. 홍콩 , 40. 남아프리카공화국 , 41. 루마니아 , 42. 파키스탄 , 43. 체코 , 44. 이란 , 45. 이집트 , 46. 칠레 , 47. 포르투갈 , 48. 페루 , 49. 핀란드 , 50. 카자흐스탄 , 51. 알제리 , 52. 나이지리아 , 53. 그리스 , 54. 이라크 , 55. 뉴질랜드 , 56. 헝가리 , 57. 카타르 , 58.

- 북미 : 미국, 캐나다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등 대부분의 국가
- 유럽연합 : 27개 전 회원국(그리스, 말타,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 덴마크,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의 비 유럽연합 회원국
- 동아시아 : 대만, 일본, 중국
- 아세안 국가들 :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티벳.
- 그 외 아시아 국가들 :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우간다, 콩고, 짐바브웨,
-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해외의 집단구제제도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집단구제제도(Collective Redress)'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올 때마다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거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면 극심한 소송부담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등 반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실제로 해외 주요국의 집단구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첫째, 과연 '시기상조'인가?

국내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제도 도입 '시기상조론'이 과연 맞는 말인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고도 경제 구조를 갖춘 국가에서 집단구제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인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국들의 도입 시기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검증해 볼 것입니다.

둘째, 세계 각국은 왜, 어떤 집단구제 제도를 도입했나? 각국의 창조적 장치는 무엇인가?

집단구제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은 다양한 제도적 조합(Mix), 운영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제도 보완의 역사를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셋째, 세계 각국의 집단구제 제도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이념적 논쟁을 넘어설 때입니다. 각국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생산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59. 모로코 60. 쿠웨이트 61. 슬로바키아 62. 우즈베키스탄 63. 케냐 64. 에콰도르 65. 도미니카 공화국 66. 불가리아 67. 푸에르토리코 68. 과테말라 69. 앙골라 70. 가나 71. 에티오피아 72. 오만 73. 크로아티아 74. 코스타리카 75. 룩셈부르크 76. 세르비아 77. 코트디부아르 78. 스리랑카 79. 리투아니아 80. 파나마 81. 탄자니아 82. 벨라루스 83. 우루과이 84. 베네수엘라 85. 콩고민주공화국 86. 슬로베니아 87. 아제르바이잔 88. 투르크메니스탄 89. 우간다 90. 카메룬 91. 미얀마 92. 튀니지 93. 볼리비아 94. 요르단 95. 짐바브웨 96. 마카오 (특별행정구) 97. 캄보디아 98. 리비아 99. 라트비아 100. 파라과이

제도를 형성하는 핵심 변수 : 각국의 고유한 맥락과 환경

전 세계 집단구제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 국가가 처한 고유한 배경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겉모습만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를 형성하고 작동하게 만든 다음의 핵심 변수들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독특한 역사와 헌법의 태도:** 각국이 지닌 고유한 사법적 역사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 구제를 바라보는 헌법의 근본적인 태도가 제도의 형태를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살펴봅니다.
- **유럽연합(EU)의 특수한 환경:** 특히 유럽 국가들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EU와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EU는 단일 시장 내의 역내 균형을 맞추고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집단구제제도의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침이 개별 회원국에 어떻게 이식되고 조화를 이루었는지 분석합니다.
- **소비자 단체의 역량:**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좌우하는 핵심 축으로서,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각국 소비자 단체의 역량을 점검합니다.
- **공공부문의 대응과 피해 회복 장치:** 사법부의 판결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분석 대상 및 범위 : 글로벌 스탠더드와 다양한 제도 유형

본 팩트북은 대한민국과 경제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큰 주요 국가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각국의 집단구제제도 도입 역사를 추적하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조화와 다양한 유형을 짚어볼 것입니다.

주된 분석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북미 및 오세아니아 (영미법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중동:** 이스라엘
- **유럽 주요국 (대륙법계 및 EU 지침 수용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해당 국가들의 제도 도입 현황과 생생한 역사를 살피는 일은,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합리적인 집단구제제도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참고] 디젤게이트와 글로벌 집단구제 제도의 진화

2015년 촉발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디젤게이트)은 전 세계 1,100만 대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통적인 '1:1 개별 민사소송'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으며, 국가별 집단구제 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구제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짐을 증명하여 전 세계적인 집단소송 법제 개편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지역 및 국가별 대응 결과

- **북미 (미국·캐나다):** "강력한 제도를 통한 신속하고 압도적인 구제"
 -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방 집단소송제도(제외 신고형, 증거개시제, 징벌적 배상)와 환경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너지를 냈습니다. 차량 환불 및

거액의 현금 배상 등 미국 내에서만 총 150억 달러 이상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며 글로벌 보상의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 캐나다 역시 주 단위의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통해 대규모 보상을 도출했습니다.
- 중남미 (브라질·멕시코): "공익소송과 행정력을 활용한 타결"
 - 브라질은 고유의 '공익민사소송'을 제기해, 단순 경제적 손해를 넘어 대기 오염 등 사회 전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집단적 정신적 피해' 배상금(약 2,800억 원)을 이끌어냈습니다.
 - 멕시코는 사법 소송 인프라가 부족한 대신 행정 당국(소비자보호청)이 직접 개입해 다국적 기업의 합의를 강제했습니다.
- 유럽연합(EU) 및 서유럽: "제도 부재의 뼈아픈 각성과 법제 대혁신"
 - 전 세계 피해 차량의 70%(800만 대)가 유럽에 집중되었음에도, 집단구제 제도가 없거나 파편화되어 있어 폭스바겐의 자발적 배상 거부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 이 참담한 실패를 겪은 후 EU는 모든 회원국에 '대표소송 지침(RAD)' 도입을 의무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 집단소송을 강력히 반대하던 독일조차 부랴부랴 '모델확인소송' 제도를 전격 신설해 대규모 합의를 이뤘습니다. (단, 스페인·포르투갈 등은 기업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둘리며 여전한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 북유럽: "전통적 옴부즈맨 중재 제도의 한계 노출"
 -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대화와 중재 중심의 국가 기구를 맹신했으나, 이들 기구가 "소프트웨어 무상 수리만으로 충분하다"며 금전 배상 요구를 일축해, 거대 불법행위 앞에서는 전통적 사적 구제 시스템이 무기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스라엘: "환경 집단소송의 문호 개방 (디젤게이트 효과)"
 -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대중을 대표해 대기 오염 등 대규모 환경 피해 집단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습니다.
- 대한민국: "제도의 철저한 사각지대"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가 일절 존재하지 않아, 12만 대의 피해 차량 중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고 '1:1 개별 소송'을 감행한 단 2천 명만이 제한적으로 구제를 받는 참담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디젤게이트: 집단소송 제도가 가른 보상의 양극화

**북미: 강력한 제도로
압도적 구제**



미국은 연방 집단소송제도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신속한 합의와 차량 환불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럽: 제도 부재의
각성과 법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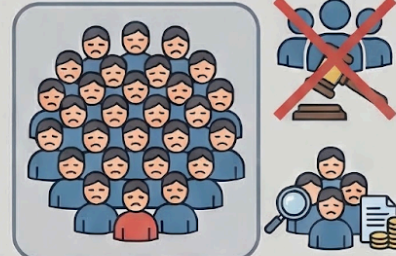
피해 차량의 70%가 집중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실패, EU '대표소송 지침(RAD)' 도입 의무화로 법제 대대적 개편.

**중남미·이스라엘:
공익 및 환경 소송의 확장**



브라질은 집단적 정신적 피해 배상, 이스라엘은 개인이 대중을 대표해 환경 집단소송 제기 가능.

**대한민국: 제도의
사각지대와 구제 한계**



12만 명 피해자

소비자 집단소송제 없어 12만 명 중 1:1 개별 소송 감행한 단 2천 명(약 1.6%)만이 제한적 보상.

디젤게이트 사태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개별 소송 중심의 사법 체계가 아닌 '강력하고 잘 정비된 집단구제 제도'가 소비자 보호의 필수불가결한 방어막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 옵트인이나, 옵트아웃이나! 옵트아웃(**Opt-out**)이어야 하는 이유

옵트아웃은 집단구제 제도의 본질과 연결됨.

- **실효적 권리 구제 (Judicial Access):** 피해자가 아무리 소액이라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 **소송 경제성 확보 (Negative Value Claims):** 개별 소송으로는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수많은 소액 피해를 묶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 **평등한 법 집행 (Binding Authority):** 옵트아웃을 통해 최종 판결 또는 합의가 전체 피해자 집단을 구속(제외 신고자 제외)하여, 기업이 동일한 문제로 반복적으로 소송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고(피고 측의 '전체 분쟁 종결' 이익), 피해자 집단 전부에 대해 공평한 법적 판단을 적용하게 합니다.

옵트인은 실패할 수 밖에 없음

옵트인(**Opt-in**) 방식의 집단구제제도는 소액 피해자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제도 본연의 목적인 '사법 접근성 제고'와 '기업의 불법 행위 억지력'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주요 실패 사례

	사건/제도명	실패 내용	참여율 관련 특이점
영 국	JJB Sports 담합 손해배상 (Which? 소송)	영국 경쟁법상 최초의 주요 소비자 소송이었으나, 옵트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만 참여 및 보상.	옵트인 방식으로, 소비자가 직접 협회에 연락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대다수가 포기.
프 랑 스	하몽법 (Loi Hamon, 2014년)	제도 도입 후 약 10년간 소송 제기 건수가 단 35건 에 불과했으며,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최종 판결은 단 1건 에 그침.	소송 참여율이 저조하여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이 탈 리 아	옵트인 제도 (2010년 도입)	도입 후 5년간 소송 인정 건수가 단 10건 에 불과했으며, 승소 사건 중 배상액이 14유로 에 불과했던 사례 등 기업 억지력 상실이 명확히 드러남..	까다로운 법원 요건과 참여율 저조로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낮음.

2. 옵트아웃을 택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옵트인 제도가 실패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액 피해의 무관심 (Apathy):** 피해액이 적은 대규모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소송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참여 신청)을 취할 동기가 부족하여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 기업 억지력 상실: 참여자가 적으면 기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부당 이득 총액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기업은 불법 행위를 반복할 유인이 남아있게 됩니다.
- 성공적인 제도의 차이: 유럽 전반의 통계에 따르면,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은 2019년 대비 **300%** 이상 성장하는 등 활발하게 활용되며, 옵트인 방식을 고수하는 국가들의 저조한 실적과 대조를 이룹니다.

따라서 미국, 호주 등 성공적인 집단구제 모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집단에 포함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옵트아웃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북미 및 오세아니아 (옵트아웃의 종주국 및 선도 지역)

- 미국: 전 세계 현대 집단소송의 원형으로,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3조 개정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전면적인 옵트아웃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퀘벡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와 연방법원에서 옵트아웃 제도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호주: 연방 차원에서 포괄적인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송 초기의 복잡한 '사전 인증' 절차를 생략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유럽 (전면 채택 및 하이브리드 도입국)

- 네덜란드: 2020년 집단손해배상법(**WAMCA**)을 통해 자국 내 거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해외 거주자는 원칙적 옵트인).
- 포르투갈: 1995년 민중소송법을 통해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옵트아웃 원칙을 일찍이 확립했습니다.
- 스페인: 최근 유럽 대륙법계의 전통을 깨고, 국내 거주 소비자에 대한 '옵트아웃'을 기본 원칙(**Default mechanism**)으로 채택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 영국: 원칙적으로 옵트인(**GLO** 등)을 고수하나, 경쟁법(담합, 독점 등) 위반 사건에 한해서는 경쟁심판소(**CAT**)를 통해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덴마크 및 노르웨이: 기본적으로 옵트인 방식을 취하지만, 개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소액이어서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량으로 옵트아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이중 모델(**Bi-model**)**을 도입했습니다.
- 슬로베니아: 2017년 제정법을 통해 사안에 따라 옵트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체계를 운영합니다.

라틴아메리카 (대륙법 기반의 옵트아웃 확립국)

- 브라질: 라틴아메리카의 표준 모델로, 공공 검찰과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전면적 옵트아웃을 채택하고 승소 시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편면적 기판력을 성문화했습니다.
- 콜롬비아: 헌법과 제472호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 피해 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그룹 소송'에 포괄적인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규정했습니다.
- 칠레: 국가소비자청(**SERNAC**)과 단체가 주도하며, 영미법의 체계를 수용하여 강력한 옵트아웃 원칙을 근간으로 합의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 아르헨티나: 단일 법전 대신 대법원의 기념비적인 판례(**Halabi**)를 통해 사법부가 직접 미국식 옵트아웃 제도를 창설해 운용합니다.

- 우루과이: 명시적인 절차 조항은 없으나, 기판력의 대세적 효력(Erga omnes)을 통해 실질적인 옵트아웃 성격(강제적 편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파나마: 소비자보호국(ACODECO)이 대리하여 옵트아웃 구조의 소송을 이끕니다.

아시아 및 중동 (혁신적 도입 및 행정 주도국)

- 한국 : 증권분야 집단소송에 옵트아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중동 내 가장 선구적인 모델로,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을 소비자, 환경, 증권 등 전 분야에 완전하게 이식했습니다.
- 태국: 아세안(ASEAN) 국가 중 가장 진보적으로, 전 민사 영역에 걸쳐 사실상 옵트아웃인 '자동적 옵트인(Automatic Opt-in)' 방식을 포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 인도네시아: 대법원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분야에 옵트아웃 메커니즘을 선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 중국: 증권 분야의 허위 공시 등에 대해 법정 기관(투자자보호기관)이 주도하는 '특별대표소송'에 한정하여 옵트아웃 방식을 운용합니다.
- 인도: 중앙소비자보호국(CCPA)이 소를 제기하고 공고 후 판결의 효력이 자동 확장되는 하이브리드 옵트아웃 성격을 갖췄습니다.
- 필리핀: 명문화된 옵트아웃 절차는 없으나, 1심 심사 통과 후 최종 판결 시 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구성원에게 '절대적 기판력'이 강제로 발생하므로 실질적인 옵트아웃 특징을 가집니다.

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최고의 집단구제 선진국으로, 헌법에 기반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옵트아웃 방식을 확고한 대원칙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이 옵트인도 혼용 가능).
- 케냐: 2025년 민사소송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미국식의 진보적인 옵트아웃 기반 공식 집단소송 체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등 : 공인된 '소비자 단체(Consumer Associations)'
- 나이지리아: 연방 고등법원 규칙을 통해 상표권, 저작권, 특허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만 국한하여, 사후 참여(Opt-in)와 사후 제외(Opt-out)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모두 도입하고 있습니다.
- 카자흐스탄: 일반 법원은 옵트인이나,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와 같이 영미법이 적용되는 특정 구역 내에 한해 옵트아웃 방식이 가능합니다.

[핵심] 집단소송의 비용 장벽과 소송 기금

집단소송에서 가장 큰 실무적 장벽은 막대한 소송 비용과 패소 시의 비용 부담(Loser pays principle) 위험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적 소송기금(Public Litigation Fund)'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운영하는 국가들과, 제3자 소송 자금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1. 북미권 (캐나다): 공적 기금의 가장 성공적인 운영 모델

캐나다는 주(Province) 단위로 집단소송 제도가 발전했으며, 퀘벡과 온타리오의 소송기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공적 지원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 퀘벡주 (Quebec): 집단소송 지원 기금 (Fonds d'aide aux actions collectives)
 - 특징: 1978년 집단소송법 제정과 함께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활발한 공적 기금입니다. 독립된 공공기관이 관리합니다.

- 운영 방식: 원고(대표 당사자)가 기금 지원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승소 가능성과 공익성을 심사하여 변호사 보수, 전문가 감정비, 법원 수수료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합니다.
- 재원 마련: 초기에는 정부 예산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승소하거나 합의할 경우 배상금의 일정 비율(보통 2~10%)을 기금으로 환수하여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주 (Ontario): 집단소송 기금 (Class Proceedings Fund)
 - 특징: 1992년 설립되었으며, 퀘벡과 유사하게 소송 비용(Disbursements)을 지원합니다. 특히 원고가 패소했을 때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하는 위험(Adverse costs)을 기금이 대신 부담해 주는 강력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승소 시 배상금의 10%를 환수합니다.

2. 남미권 (브라질, 콜롬비아): 잔여 배상금(Cy Pres) 및 벌금 기반의 공익 기금

남미 국가들은 소비자 보호와 환경 파괴 등에 대한 제재금이나 미청구 배상금을 모아 공익 기금을 조성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 브라질 (Brazil): 확산적 권리 방어 기금 (Fundo de Defesa de Direitos Difusos, FDD)
 - 특징: 공익민사소송법(Ação Civil Pública) 제13조에 근거하여 조성된 연방 차원의 막대한 기금입니다.
 - 운영 방식: 기업의 환경 파괴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지 않은 잔여 배상금(Cy Pres 원리 적용)과 각종 행정 벌금을 이 기금으로 귀속시킵니다.
 - 활용: 이 기금은 새로운 집단소송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훼손된 환경 복원, 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등 피해 집단 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 콜롬비아 (Colombia): 집단적 권리 방어 기금 (Fondo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e Intereses Colectivos)
 - 특징: 국가 옴부즈만(Defensoría del Pueblo)이 관리하며, 브라질과 유사하게 집단소송 판결에 따른 벌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민중소송(Acción Popular) 제기자들에게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중동/기타 지역: 선별적 국가 지원 모델

- 이스라엘 (Israel): 집단소송 자금 지원 기금 (Class Action Financing Fund)
 - 특징: 2006년 집단소송법 제정 이후 2010년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단소송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는 소송 중 경제적 이유로 진행이 어려운 사건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전문가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4. 민간 펀딩을 활용하는 국가 모델

- 호주/영국/미국형 (제3자 소송펀딩, TPLF): 국가 예산 투입 없이, **민간 투자회사(Litigation Funder)**가 소송 비용을 대고 승소 시 배상금의 20~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시장 주도형 모델입니다.
- 유럽 연합의 경우, 제3자 소송펀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집단소송의 3대 기원

세계 집단소송의 가장 큰 3가지 기원을 찾아 본다면, 미국의 옵트아웃 집단소송, 남미(이베로 아메리카)의 집단소송, 유럽연합의 소비자 단체 활동과 소비자 단체의 집단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뿌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각국 제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집단소송의 원류 - 미국에서 기원한 집단소송의 확산

현대적 의미의 집단소송 제도는 1966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 개정을 통해 확립된 '옵트아웃(**Opt-out**, 제외 신고제)' 모델을 근간으로 합니다. 이 방식은 명시적으로 소송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를 자동으로 원고 집단에 포함시켜 사법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에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합니다.

1990년대 이후 영미법계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를 시작으로, 2000년대 이스라엘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가 자국의 사법 체계와 실정에 맞게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변용해 왔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도입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현대 집단소송의 종주국

미국은 전 세계 집단소송의 원형을 제시한 국가입니다. 1966년 규칙 개정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옵트아웃'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 **핵심 메커니즘: 잠재적 피해자 100%**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옵트아웃 원칙, 기업의 내부 은폐 정보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파멸적 재무 위험을 가하는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그리고 피해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변호사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적 규제 수단으로 작동합니다.
- **엄격한 문지기 역할:** 남소를 막기 위해 소송 초기 단계에서 공통성, 전형성, 적절성, 우월성 등을 따지는 매우 엄격한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절차를 거쳐야만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캐나다: 옵트아웃과 '공익소송기금'의 결합

캐나다는 각 주(**Province**)별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시켰으며, 1988년 퀘벡주, 1992년 온타리오주가 영미법권 최초로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제정하며 미국식 옵트아웃 제도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 **공익소송기금(Public Fund) 창설:**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 있어 집단소송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등은 국가 차원의 '집단소송 기금(**CPF**)'을 세계 최초로 설립하여, 원고의 소송 준비금을 무상 지원하고 패소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는 완벽한 안전판을 마련했습니다.
- **시프레(Cy-près) 원칙의 적극 활용:** 개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나누어 주고 남은 거액의 잔여 배상금(미청구 금액)을 기업에 돌려주지 않고, 피해 집단과 관련된 공익 단체나 연구 펀드에 기부하도록 하는 시프레 원칙을 널리 활용하여 불법행위 억지력을 유지합니다.

3. 호주: '사전 인증 생략'과 '소송 펀딩' 기반의 선진국

호주는 1992년 연방법원법 제IVA부를 신설하여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옵트아웃 집단소송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국가로 평가받습니다.

- 사전 인증(**Certification**) 절차의 생략: 미국, 캐나다와 달리 호주는 소송 초기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전 인증' 단계를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최소 7명 이상의 피해자와 실질적인 공통 쟁점 1개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개시되며, 피고가 부적절함을 입증하여 '탈집단화'를 청구하는 방어적 구조를 취해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 제3자 소송 금융(**Litigation Funding**)의 합법화: 호주 역시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업적 투자자가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승소 시 배상금의 일부를 떼어가는 제3자 소송 펀딩(**TPLF**)을 전면 합법화하였습니다. 이 자본 시장의 발달이 호주 집단소송을 팽창시킨 핵심 동력입니다.

4. 이스라엘: 국가 주도 펀딩과 독창적 하이브리드 모델

비영리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 포괄적인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을 성공적으로 이식했습니다.

- 열거주의와 원고 적격의 확장: 무분별한 남소를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된 특정 분야(소비자, 환경, 경쟁법 등)에서만 소송을 허용하는 '열거주의'를 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소비자 위원회, 환경청 등 특정 공공기관과 비영리 단체에게도 직접 원고로 나설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국가 주도의 '공공 집단소송 펀드': 자본의 논리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평등권, 노동, 공중 보건 등의 공익적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펀드'를 창설하여 원고의 초기 소송 비용 및 패소 리스크를 지원합니다.

5. 뉴질랜드: 판례를 통한 급격한 발전

명문화된 법률은 없으나, 뉴질랜드 법원은 유연한 판례 해석을 통해 옵트아웃 방식의 현대적인 집단소송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허용 (**Ross v Southern Response**): 과거 뉴질랜드에서는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뉴질랜드 대법원은 이 판례를 통해 묵시적으로 소송에 포함되되 제외를 원할 경우에만 의사를 밝히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소송을 허용했습니다.
- 분할 재판(**Split Trials**): 다수의 개별 청구액을 다루기 위해 법원은 흔히 1단계에서 공통 쟁점(피고의 법적 책임 등)을 먼저 다루고, 여기서 승소하면 2단계에서 개별 쟁점(손해액 등)을 다루는 분할 재판 방식을 취합니다.

유럽연합과 소비자 단체의 역할

세계 각국의 집단구제제도에서 소비자 단체(**Consumer Organizations**)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 비용, 시간, 정보 비대칭성의 한계(합리적 무관심)를 극복하고, 기업의 위법행위를 통제하는 핵심적인 '사적 규제자'이자 '사법적 방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대표소송 지침(RAD) 도입 등 전 세계적인 입법 트렌드에 따라,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검증을 거친 '적격 단체'에게 소송 주도권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별 소비자 단체의 역할과 권한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유럽: '적격 단체' 독점 및 국가의 든든한 지원 모델

유럽 국가들은 미국식 로펌 주도의 기획 소송을 극도로 경계하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소비자 단체에게 집단소송 제기 권한(원고 적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독일:** 개별 소비자의 직접 제소를 불허하고, 연방사법청(BfJ)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적격 소비자 단체(예: 연방소비자연맹 vzbv)'만이 구제소송(Abhilfeklage)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자금 지원이 전체 예산의 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적용받지만, 국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거대 기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준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습니다.
- **프랑스:** "누구도 대리인을 통해 소송할 수 없다"는 전통을 깨고, 국가(DGCCRF)의 공식 승인을 받은 소수의 단체(예: UFC-Que Choisir 등 15개)에게만 집단소송 원고 적격을 독점적으로 부여합니다. 이들은 자체 상근 변호인단과 막대한 예산을 갖춘 거대 조직으로 활동합니다.
- **벨기에 & 스페인:** 벨기에에는 '테스트아샤(Test-Achats)'와 같은 비영리 이념적 원고(적격 단체)만이 소송을 독점하며, 스페인 역시 OCU, FACUA 등 국가 보조금을 받는 적격 단체가 사실상 사적 구제 시장을 주도합니다.
- **네덜란드:** 70년 역사의 '소비자연맹(Consumentenbond)'과 같은 전통적 단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해결만을 위해 임시로 설립되는 '특수 목적 재단(Ad-hoc Stichting)'에게도 집단소송(WAMCA) 제기 권한을 넓게 인정합니다.
- **이탈리아 (이중 트랙):** 일반 민사소송법에서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EU 지침에 따른 '소비자 대표소송' 영역에서는 알트로콘수모(Altroconsumo)와 같은 적격 단체만이 소비자의 개별 위임장 없이도 독자적으로 징벌적 구제를 청구할 독점적 권한을 지닙니다.
- **핀란드:** 과거에는 '소비자 옴부즈만(공공기관)'만이 대표소송을 독점했으나, 디젤게이트 사태 이후 공공 독점의 한계를 절감하고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비영리성, 독립성 등 8가지 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비자 단체로 원고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2. 아시아: 국가의 엄격한 인증과 관리(필터링) 모델

아시아 국가들은 단체소송을 허용하면서도 남소 방지를 위해 국가가 직접 단체의 질적 수준을 강력하게 통제합니다.

-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엄격한 이중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예방적 '금지청구'는 '적격소비자단체(QCO)'가 수행하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2단계 집단소송은 재무 건전성과 변호사 등 전문가 요건을 추가로 통과한 극소수의 '특정적격소비자단체(SQCO, 현재 4곳)'만이 수행할 수 있는 철저한 통제 모델입니다.
- **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비영리 소비자 보호 단체가 20명 이상의 피해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단체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원 소비자보호위원회(CPC)의 주기적 심사를 통해 '우수(Excellence)' 평가를 유지해야 하는 매우 높은 문턱(예: CFCT)이 적용됩니다.

3. 라틴아메리카: 헌법적 권리 보장 및 비용 지원 모델

라틴아메리카는 헌법과 특별법을 통해 시민단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며, 소송 비용의 벽을 낮춰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아르헨티나: 헌법 제43조를 통해 소비자 단체에 광범위한 당사자 적격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합니다. 특히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무비용 소송 혜택(Beneficio de Gratuidad)'을 자동 부여하여, 인지대와 감정 비용은 물론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부담까지 면제해 주어 단체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합니다.
- 칠레: 국가 기관인 소비자청(SERNAC)과 함께, 설립 1년 이상 된 비영리 소비자 단체(AdC)가 집단소송을 주도합니다. 이들 단체의 열악한 자본력을 돕기 위해 '공익소송기금(Fondo Concursable)'을 국가 차원에서 창설하여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직접적 소송 대리 비용 사용은 금지됨).
- 브라질: 공공 검찰(MP)이 소송의 90% 이상을 주도하지만, 설립 후 1년이 지난 공익 목적의 민간 단체에게도 '이념적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여 집단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4. 기타 국가: 독립적 위상과 행정적 장벽의 대조

- 이스라엘: 개인이 소송을 주도하기 어려운 경우, 비영리 시민단체나 정부 지원을 받는 독립 기구인 '이스라엘 소비자 위원회(ICC)'가 직접 원고로 나설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공 집단소송 펀드'를 통해 단체의 소송 비용(전문가 감정비 등)을 지원하는 선구적 제도를 운용합니다.
- 모로코: 법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소송을 주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내무부로부터 '공익 단체(Public Utility)'로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행정적 장벽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가 전무하여 제도가 마비된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베로 아메리카의 확산적 이익과 3가지 권리

라틴 아메리카의 집단구제는 브라질의 선구적인 입법과 헌법적 권리에 기반하여 발전한 독자적인 모델로, 사법 접근성 확대와 공익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1. 유래 및 핵심 이념

- 유래: 1970년대 이탈리아 비교법학자 마우로 카펠레티(Mauro Cappelletti)가 주창한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 이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 핵심 이념: 환경, 소비자 권리 등 소규모로 분산되어 개별적 구제가 어려운 공동체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확산적 이익(Diffuse Interests)' 보호입니다.

2. 가지 권리 유형 (브라질 법률 체계 수용)

- 확산적 이익 (Diffuse Interests):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불가분한 이익 (예: 환경 파괴, 구제 내용은 행위 중지나 원상 복구).
- 집단적 이익 (Collective Interests):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귀속되는 불가분한 이익 (예: 특정 은행 고객 집단).
- 개별적 동질 이익 (Individual Homogeneous Interests): 공통의 기원(사건)으로 인해 다수에게 발생한 개별적 권리(손해배상 청구권)의 집합. 개인이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청구하는 데 활용됩니다.

3. 여러 가지 제도와의 결합 (라틴 아메리카 모델)

- 지역적 표준: 2004년 이베로 아메리카 집단소송 모델 법전이 채택되어 이 지역 국가들의 입법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습니다.
- 제도적 기반: 단일 법전 대신 헌법 개정, 개별 법령(소비자보호법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절차적 공백을 메우는 하이브리드(Hybrid) 모델이 다수입니다.

4. 각국의 주요 현황

- 브라질: 라틴아메리카의 표준 모델입니다. 독립된 공공 검찰(MP)과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강력한 옵트아웃 시스템이며, 승소 시에만 기판력이 미치는 '편면적 기판력'을 성문화했습니다.
- 멕시코: 소비자보호청(PROFECO) 등이 주도하며, 판결 후 18개월 내 합류하는 등 매우 보수적인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아르헨티나: 단일 법전 없이 대법원 판례(Halabi 판결)와 헌법 제43조를 통해 사법부가 직접 미국식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를 창설해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체제입니다.
- 칠레: 소비자청(SERNAC) 주도하에 강력한 옵트아웃 원칙을 채택하여 합의 압박을 가하며, 징벌적 요소와 공익소송기금을 운영합니다.
- 콜롬비아: 헌법 제8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인 이상 피해 시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그룹 소송(Acción de Grupo)에서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합니다.
- 우루과이: 일반소송법 제42조에 근거해 옵트아웃 방식을 운용하며, 판결의 효력이 전체 이해관계자에게 자동 확장됩니다.
- 페루: 소비자보호기관(INDECOPI)의 행정적 구제 역량이 매우 강하며, 소송에서는 30일 기한의 제한적 옵트아웃(실질적 옵트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파나마: 소비자보호국(ACODECO)이 소비자를 대리하여 이끄는 옵트아웃 구조입니다.
- 코스타리카: 소비자 단체소송권은 인정되나(옵트인), 배상액 산정이 엄격해 행정 조정을 선호합니다.
- 베네수엘라: 명목상 옵트아웃의 헌법적 근거는 있으나 정치·경제 위기로 사법 실효성이 낮습니다.

헌법에서 집단소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

민사소송법이나 특별법 수준을 넘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직접 집단구제의 기원을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는 환경권이나 소비자 권리 같은 '제3세대 인권(집단적 권리)'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며 사법접근성을 극대화하려는 특징을 보입니다.

1.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집단소송 체계가 고도로 발달한 선도 국가로, 헌법에 집단소송의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적 근거: 1993년 임시 헌법과 1996년 최종 신헌법 제38조(c)항은 "집단이나 계층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법원에 접근할 권리"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도입 배경: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체제 종식 이후, 극심한 사회적·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흑인 다수 인구의 사법 접근성을 혁명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변혁적 헌정주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을 바탕으로 남아공 사법부는 오랜 기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집단소송의 절차적 뼈대를 구축해왔습니다.

- 케냐: 헌법에 따라 '집단 소송(Class Action)' 제도가 인정되며, 공익소송(Public Interest Litigation, PIL)이 활발하게 이용됩니다. 적용 분야: 환경, 인권,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2. 라틴아메리카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이후 군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격변기 속에서 헌법을 개정하며 집단구제 제도를 헌법적 권리로 편입시켰습니다.

- 브라질: 1988년에 제정된 이른바 '시민 헌법'은 환경권, 소비자 권리 등을 기본권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헌법 제129조 제3항을 통해 '공공 검찰(MP)'을 제4의 권력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이들에게 "확산적·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공익민사소송을 제기할" 전속적인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제5조를 통해 민중소송과 집단적 직무집행명령의 근거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 콜롬비아: 수십 년간의 무력 충돌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1991년 헌법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헌법 제88조는 입법부에게 환경, 공중 도덕, 자유 경쟁 등을 보호하기 위한 '민중소송(Acción Popular)'과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Acción de Grupo)' 절차를 법률로 제정할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 제472호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아르헨티나: 1994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43조를 신설하여, 환경, 경쟁,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암파로(Amparo Colectivo)' 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수십 년간 의회의 절차법 입법이 방치되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 헌법 제43조가 그 자체로 직접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아 사법부가 직접 판례(Halabi 판결)를 통해 집단소송 제도를 창설해 냈습니다.
- 멕시코: 2010년 연방 헌법 제17조에 집단소송(Acciones Colectivas)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멕시코 사법 역사상 최초로 집단적 권리와 확산적 이익을 헌법적 권리로 명시한 결단이었으며, 헌법을 통해 연방 의회에 관련 법률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연방 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확립했습니다.
- 파라과이: 1992년 개정 헌법 제38조에 환경, 공중 보건, 소비자 이익 등 공동체 삶의 질과 관련된 "확산적 이익의 방어권"을 명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단일 집단소송 절차법이 부재함에도 이 헌법 조항과 암파로(제134조)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은 소비자 단체 등의 원고 적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에콰도르: 헌법에 근거하여 '집단적 권리 보호 소송(Collective Rights Protection Actions)' 제도가 존재합니다. 소비자, 환경, 공공 서비스 등 집단적 권리 침해에 적용됩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집단 소송(Acción de Amparo Colectivo) 제도가 인정되며, 주로 인권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중점을 둡니다.

3. 포르투갈

유럽 대륙법계 국가 중 이례적으로 일찍 집단소송을 정착시킨 포르투갈 역시 그 기원은 헌법에 있습니다.

- 헌법적 근거: 1974년 카네이션 혁명(민주화) 이후 제정된 1976년 헌법 제52조 제3항은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를 통하여 공중 보건, 소비자 권리, 환경 보호 등을 방어하기 위한 '민중소송(Ação Popular)'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 이후 헌법 개정을 거치며 단순한 금지명령을 넘어선 '상응하는 배상 청구권'까지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되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1995년 전면적 옵트아웃(Opt-out)을 채택한 민중소송법(Law 83/95)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와 개인, 중복 허용

개인과 단체의 집단소송을 모두 허용하는 주요 국가들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탈리아: '이중 트랙(Dual Track)' 시스템

이탈리아는 적용 법률에 따라 개인과 단체가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일반 민사 집단소송: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동일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 개인(소비자, 기업 불문)이나 비영리 단체 누구나 단독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표소송: EU 지침을 반영해 신설된 제도로, 이 영역에서는 개인이 아닌 국가 공인을 받은 '적격 단체(Qualified Entities)'만이 소비자의 개별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소송을 개시할 배타적 권한을 가집니다.

2. 이스라엘: 다원적인 원고 자격 인정

이스라엘 집단소송법은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공공기관, 비영리 시민단체 모두에게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폭넓게 부여합니다.

- 개인 원고: 집단 전체가 공유하는 청구 원인을 가진 개인 피해자라면 누구라도 법원의 심사를 거쳐 전체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집단소송의 압도적 다수가 이 형태로 제기됩니다.
-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개인 피해자가 나서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NGO)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소비자를 대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포르투갈: 일반 민중소송과 소비자 대표소송의 병존

- 일반 민중소송: 제83/95호 법률에 따라 포르투갈의 일반 개인 시민 누구나 공익을 위해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자체나 공익 협회, 검찰청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 대표소송: 반면, 2023년 개정된 소비자 보호 기반의 소송에서는 개인 소비자의 단독 제소를 불허하고, 국가의 요건을 통과한 '적격 단체'만이 제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4. 아르헨티나: 판례와 헌법에 기반한 포괄적 원고 적격

아르헨티나는 헌법 및 대법원 판례(Halabi 판결)를 통해 집단소송의 원고 적격을 다음과 같이 다원화했습니다.

- 영향을 받은 당사자(개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원 개인이 자신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전체 집단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기관: 헌법상 독립 기관인 '국가 옴부즈만'이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비정부기구(NGO) 및 소비자 단체'도 소송을 주도할 권한을 가집니다.

5. 멕시코: 피해자 그룹 대표와 단체/기관의 병행

멕시코는 개인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으나, 다수의 개인이 모인 대표와 단체를 모두 허용합니다.

- **공동 대표:** 최소 **30명**(법 개정으로 **15명**으로 완화) 이상의 피해자로 구성된 집단이 공동 대표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체 및 공공기관:** 자격을 갖춘 비영리 시민단체(**NGO**)와 사안별 관할 국가 기관(연방소비자보호청, 환경보호청 등)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대만: 선정당사자와 공익 단체 소송의 분화

대만은 민사소송법을 통해 옵트인(**Opt-in**) 기반의 다원적 제도를 운영합니다.

- **선정당사자에 의한 소송 (제2유형):**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피해자가 자신들 중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선정당사자)를 선출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 단체에 의한 소송 (제3/4유형):** 법인격 있는 비영리 단체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가 회원이나 피해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단체의 이름으로 일괄 손해배상이나 금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7. 노르웨이 및 스웨덴: 북유럽의 개방적 구조

- **노르웨이:** 집단소송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피해자'는 물론, 특정 공익 목적을 가진 '소비자 단체' 등 민간 기구 및 공공 기관 모두 당사자로 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스웨덴:** 개인, 단체, 공공기관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는 가장 개방적인 집단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개인 피해자가 소송 비용이나 보복의 두려움으로 제소하지 못하는 상황(합리적 무관심)을 보완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나 국가 기관의 역할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주도적인 사법 구제 권리(개인 대표당사자 소송) 역시 박탈하지 않고 열어두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집단구제 제도 소개]

미국의 집단구제 제도

미국의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는 다수 당사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집단구제제도의 모태로 평가받습니다. 17세기 영국 형평법원의 '평화의 소(**Bill of Peace**)'에 기원을 두며,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3조 제정을 통해 최초로 성문화되었습니다.

1. 제도의 현대적 정착과 옵트아웃(**Opt-out**) 혁명

오늘날의 강력한 미국 집단소송은 **1966년 FRCP 제23조**의 전면 개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옵트아웃(Opt-out, 제외 신고)**' 방식을 전면 도입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법원에 명시적으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잠재적 피해자가 자동으로 원고 집단에 포함되어 판결의
기판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메커니즘

미국의 집단소송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무기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옵트아웃(Opt-out) 원칙:** 잠재적 피해자 100%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막대한 배상액
규모를 창출하고, 기업에 엄청난 재무적 압력을 가하여 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
- **광범위한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원고가 법원을 통해 기업의 내부 이메일, 회의록
등 핵심 정보를 강제로 제출받을 수 있어 기업과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합니다.
-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실제 피해액을 크게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의 파산까지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 **변호사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원고는 초기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승소 시 변호사가 배상액의 막대한 비율(보통 20~30%)을 수임료로 가져갑니다. 이
구조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윤 동기를 가지고 '민간 법무부장관(Private Attorney
General)'으로서 자발적으로 시장의 불법행위를 규율하게 만듭니다.,.

3. 엄격한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요건

피고 기업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매우 엄격한 '집단 인증'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 **기본 요건 (FRCP 23(a)):** 다수성(Numerosity), 공통성(Commonality),
전형성(Typicality), 적절한 대표성(Adequacy of Representation)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추가 요건 (FRCP 23(b)(3)):**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공통 쟁점이 개별
쟁정보다 압도한다는 '우위성(Predominance)'과 집단소송이 다른 해결 방식보다
낫다는 '우월성(Superiority)'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4. 집단소송의 3대 기능

- **합리적 무관심(Rational Apathy) 극복 및 사법접근권 보장:** 개인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소액 피해들을 수천, 수만 명 단위로 규합하여
실질적인 사법 구제의 문을 엽니다.
- **불법행위 억제(Deterrence):** 막대한 배상금 위협을 통해 기업이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사법 경제성 및 종국적 해결:** 수십만 건의 개별 소송 폭주를 막고 단일 재판으로 병합
심리하며, 피고 기업에게도 단 한 번의 합의로 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종국적
분쟁 해결(Global Peace)'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집단구제 제도

캐나다는 미국과 유사하게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가 가장 발달하고 활발하게
운용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각 주(州)의 법률에 근거하여 대규모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합니다. 캐나다 집단소송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州) 단위 법률 및 핵심 메커니즘

- 법적 근거: 캐나다는 연방 국가이므로, 집단소송 제도는 연방법이 아닌 주(州) 단위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퀘벡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집단소송법이 가장 활발하게 운용됩니다.
- 제도 명칭: 일반적으로 '**Class Action**' 또는 퀘벡주에서는 '**Recours Collectif**'이라고 불리며, 그 구조는 미국의 집단소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2.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채택

- 원칙: 캐나다 집단소송의 핵심은 옵트아웃(Opt-Out) 방식입니다.
- 내용: 법원이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인증(Certification)하면, 법원에서 정한 집단(Class)의 모든 구성원은 자동적으로 소송의 결과에 포함되어 구속력을 가집니다.
- 제외 의사: 만약 집단 구성원이 소송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개별 소송을 제기하길 원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소송 집단에서 제외(Opt-Out)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방식은 소액 다수 피해자의 사법 접근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3. 인증 절차 (Certification)의 중요성

- 절차: 집단소송의 시작은 법원이 해당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해도 좋다고 인증(Certification)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소송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 주요 인증 요건:
 - 공통 쟁점(Common Issues):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적 또는 법률적 쟁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 대표자 적절성: 원고 대표(Representative Plaintiff)가 집단 전체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집단소송의 효율성: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개별 소송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어야 합니다.

4. 제3자 소송 자금 조달 (Third-Party Funding)

- 허용: 캐나다는 제3자 소송 자금 조달(Third-Party Litigation Funding, TPLF)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영향: 이는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 제기를 망설이는 원고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적용 분야 및 특징

- 광범위한 적용: 소비자 보호, 증권 불공정 거래, 환경 피해, 개인 정보 유출(Privacy Breach) 등 대규모의 소액 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활발하게 제기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특정 주(州)의 법에 따라 기업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 인정되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 관련 소송: 캐나다 법원은 때때로 캐나다 기업이 해외에서 저지른 인권 침해 등 국제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집단구제 제도

호주의 집단구제제도(Class Action System)는 1992년 연방법원법(Federal Court of Australia Act 1976) 제4A편(Part IVA)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사법 접근성 극대화**와 **재판 효율성**을 목표로 설계된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진보적인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1.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호주 사법 시스템은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계승하여 왔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완벽히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소송 병합을 허용하여 현대 사회의 대규모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공백(Access to Justice Gap)**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 호주법률개혁위원회(ALRC)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핵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 사법 접근성 제고: 높은 소송 비용으로 인해 권리 행사를 포기했던 소액 피해자들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
- 재판 효율성 극대화: 다수의 유사한 청구를 단일 절차로 일괄 심리하여 사법 자원의 낭비를 방지.
- 실체법 집행력 강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거대 기업에 재무적 타격을 가하고 불법 행위를 억지하는 거시적 사회 규제 기능 수행.

2. 호주 집단소송의 3대 핵심 구조

호주 제도는 미국의 집단소송(Certification 필수)과 달리 원고의 소송 진입 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추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 옵트아웃(Opt-out) 원칙 전면 채택
 - 대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잠재적 피해자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소송의 당사자로 편입됩니다.
 -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스스로 **제외 신고서(Notice of opting out)**를 제출해야 하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최종 판결이나 합의의 효력이 자동 적용됩니다.
- 사전 인증(Certification) 절차 생략
 - 미국과 달리, 재판 초기에 법원으로부터 집단소송 진행 여부를 승인받는 까다롭고 값비싼 '사전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 대신, 피고 측이 사후적으로 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탈집단화(Declassing)**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있습니다.
- 완화된 소송 개시 요건
 - 집단 구성원 **7명** 이상이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청구 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황(same, similar or related circumstances)**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 모든 피해자의 청구에 걸쳐 **최소 1개 이상의 실질적인 공통의 쟁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의 '압도적 공통성' 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입니다.

3. 소송 자금 지원(Funding) 혁신

호주의 집단소송이 활성화된 핵심 요인은 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을 개인이 아닌 외부 자본이 감당하는 구조를 법이 인정한 데 있습니다.

제도 구분	주요 내용	의미
제3자 소송 펀딩(TPLF)	2006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합법화. 외부 상업 펀드가 소송 비용과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Adverse costs)을 100% 부담. 승소 시 배상금의 일정 비율(20~40%)을 수수료로 받음.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무적 위험 없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게 해주는 '무기 대등의 원칙' 실현.
그룹 비용 명령(GCO)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2020년 도입. 원고 로펌이 소송 비용과 위험을 직접 감수하고 승소 시 법원이 허락한 비율(%)을 성공보수로 받는 제도.	외부 펀드의 수수료를 줄이고 피해자의 배상금 수령액을 늘리는 경쟁 유도 효과 발생.

4. 주요 활용 영역 및 실무

도입 초기에는 주주 손해배상 소송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사이버 보안: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건(예: 메디뱅크, 옴투스) 등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집단소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환경 및 대규모 재난: 2009년 '블랙 새터데이' 산불 참사 집단소송에서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이 지급된 사례는 재난 구제의 실효성을 입증.
- 공정거래 후속 소송: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조사 및 행정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후속 소송(Follow-on litigation)**이 활발합니다.
- 노동 및 인권: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 권리 및 취약 계층 인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 종합 평가

호주의 제도는 사법부, 입법부, 자본 시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진화해 온 결과이며, 높은 사법 접근성과 실효적인 불법 행위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진보적인 집단구제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상업적 소송 펀드의 과도한 이익 추구 가능성(기획 소송)과 다중 소송으로 인한 비효율성 등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구제 제도

이스라엘의 집단구제제도는 2006년에 제정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General Class Actions Law, 히브리어: חוק תובענות ייצוגיות)**을 통해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통합 및 활성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인구 대비 소송 제기 건수가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 핵심 법적 기반 및 통합

-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 (2006년 제정): 이스라엘은 기존에 환경, 증권, 소비자 보호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영역별로 분산 적용되던 대표당사자소송 시스템을 2006년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을 제정하여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통합했습니다.
- 제도 모델: 이 법은 기본적으로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모델로 채택했습니다.

- 입법 목적: 법의 목적은 대표당사자소송(집단소송)의 활성화와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2. 역사적 배경 및 발전 과정

- 초기 소극성: 1988년 증권법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집단소송 조항이 도입되었으나, 2006년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집단소송의 인증(Certification)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법원의 우려: 당시 법원은 부당한 집단소송 인증 가능성, 피고 기업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 우려, 그리고 소송의 진정한 승자가 원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변호사만 이익을 얻는 문제) 등을 우려했습니다.
-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원은 기존 민사소송법이 현대적 의미의 집단소송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했고(2003년 사건), 이는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제도 활성화 요인

이스라엘 집단소송이 매우 활발한 이유(2012년 기준 인구 대비 미국보다 높은 빈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채택과 연관됩니다.

- 옵트아웃(Opt-out) 제도: 소송 요건을 갖춘 모든 잠재적 피해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06년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가 검색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제도 활성화의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성공보수제도(Contingent Fee): 변호사가 승소했을 때에만 배상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성공보수제도가 활성화되어, 피해자들이 초기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소송 제도는 미국의 모델을 수용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제도를 통합하고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극복하여, 현재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 권리 구제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영국의 집단구제 제도

집단 소송 명령(GLO), 대표 당사자 소송(Representative Actions), 경쟁항소심판소(CAT)의 집단 소송 등 3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1. 집단 소송 명령 (Group Litigation Orders, GLOs)

GLO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다수 당사자 소송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 성격 (옵트인 방식): GLO는 판결의 효력을 받기 위해 개별 청구인이 능동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관리하는 '그룹 명부(Group Register)'에 등록해야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입니다.
- 성립 요건 및 절차: 다수의 청구인 사이에 '공통되거나 관련된 사실 또는 법률적 쟁점(GLO issues)'이 존재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개시됩니다. 법원은 관리 판사(Managing Judge)와 수석 변호사(Lead Solicitor)를 지정하며, 대표 사건(Test claims)을 통해 공통 쟁점을 우선적으로 판결합니다.

- **비용 부담:** 영국 소송의 특징인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나, GLO에서는 비용을 '개별 비용'과 '공통 비용'으로 분리합니다. 청구인들은 그룹 전체를 위해 발생한 공통 비용에 대해 균등하게(또는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분할 책임(**Several liability**)을 집니다.
- **활용 분야:** 환경오염(예: BHP 댐 붕괴 사건), 제조물 책임(예: 디젤게이트 배기가스 조작, 의료기기 결함), 우체국 스캔들, 데이터 유출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 **한계:** 원고를 일일이 모집하고 개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막대한 광고비와 행정적 비용이 수반되어, 도입 후 25년 동안 연평균 5건 수준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의 경우, 경쟁법 위반이 아닌 사기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CPO(옵트아웃)를 이용하지 못하고 GLO 절차로 수만 명을 개별 모집해야 하는 극심한 비효율을 겪었습니다.

2. 대표 당사자 소송 (Representative Actions, CPR 19.8)

민사소송규칙 19.8조에 따른 대표 당사자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이용 가능한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소송입니다.

- **동일한 이해관계(Same Interest) 요건:**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대표자와 모든 집단 구성원이 소송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 **한계 (Lloyd v Google 판결):** 2021년 영국 대법원은 집단 구성원 개개인의 피해 정도가 달라 '개별적인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한 포괄적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원화 접근법 (Bifurcation):** 위 판결 이후, 책임 소재와 같은 공통 쟁점만 대표 소송(1단계)으로 먼저 판결받고, 개별 손해액 산정은 나중에 별도로 진행(2단계)하는 이원화 전략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Commission Recovery* 사건에서는 이 방식이 허용되었으나, 개별 투자자의 '신뢰(reliance)' 입증에 필수적인 증권 소송(*Wirral Council v Indivior*)에서는 기각되는 등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3. 경쟁항소심판소(CAT)의 집단 소송 (Collective Proceedings)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도입으로 신설된 제도로, 현재 영국에서 손해배상을 위한 유일한 공식적 '옵트아웃(**Opt-out**)'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영국은 2003년 경쟁법 분야에 '옵트인' 방식의 집단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으나, 축구 셔츠 가격 담합(JJB Sports) 사건에서 소비자 참여율이 단 0.01%에 그치는 등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소비자권리법(CRA)을 제정하여, 사법 역사상 최초로 제한적 옵트아웃(**Opt-out**) 기반의 집단 손해배상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 **적용 요건 및 절차:** 이 제도는 오직 1998년 경쟁법(독점, 담합 등) 위반 사건에만 엄격히 한정되며, 전문 법원인 '경쟁항소재판소(CAT)'가 전속으로 관할합니다. CAT의 재량에 따라 옵트인이나 옵트아웃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증(Certification) 절차:** 소송을 진행하려면 심판소로부터 집단 소송 명령(CPO)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자의 적격성(Authorisation)과 청구의 적합성(Eligibility)을 엄격히 심사받습니다.
- **총체적 손해배상 (Aggregate Damages):** 개별 피해자의 손해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 없이, 집단 전체가 입은 총 손해액을 산정하여 배상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법원에 부여합니다.

- **총액배상 및 징벌적 배상 금지:** 미국식 남소를 차단하기 위해 피고를 처벌할 목적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개별 피해자의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 경제학적 추정을 통해 집단 전체의 손해를 한 번에 산정하는 '총액배상(Aggregate Damages)'을 허용하여 소액 다수 사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최근 동향:** 2020년 대법원이 *Merricks v Mastercard* 사건에서 CPO 사전 인증 문턱을 대폭 낮춰주면서, 2021년 이후 CAT에 접수되는 옵트아웃 집단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강력함 때문에 최근 원고들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환경 문제, 불공정 약관 등 본질적으로 소비자/정보보호 문제에 가까운 사건들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경쟁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여 CAT 옵트아웃 소송으로 반입하려는 시도(예: 메타, 애플, 아마존 대상 소송)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4. 소송자금 조달 및 잔여 배상금 처리 (제도적 인프라)

- **제3자 소송자금 조달(TPLF):** 영국은 패소자가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을 취하고 있어, 막대한 자본을 대는 제3자 소송자금 조달자(Funder)의 존재가 집단소송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최근 2023년 대법원 판결(PACCAR 사건)로 이들의 수익 약정 방식이 무효화될 위기에 처하자, 영국 정부는 집단소송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해 자금 조달 합법성을 복원하는 긴급 입법 개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 **미청구 배상금의 공익 환원 (Cy-près 원칙):** 옵트아웃 소송에서 승소나 합의를 이끌어내더라도 피해자가 찾아가지 않아 남은 막대한 '미청구 배상금'은 피고 기업에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이 잔여 자금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 구조 기금 역할을 수행하는 '사법접근권 재단(ATJF)'에 전액 기부되도록 의무화되어, 빈곤층 무료 법률 상담 등 영국 사회 전체의 공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집단구제 제도

프랑스의 집단구제 제도(Action de groupe)는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 EU의 대표소송 지침(2020/1828)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2025년 4월 30일 'DDADUE 법'의 제정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했습니다.

1. 부문별 제도의 통합 및 적용 범위의 전면 확대

- **과거의 한계:** 2014년 하몬법(Loi Hamon)을 통해 소비자 및 경쟁법 분야에 처음 도입된 이후 보건, 환경, 개인정보, 직장 내 차별 등 7개의 개별 분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기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10년 동안 실제 제기된 소송이 약 40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 **단일 체제로의 통합:** 2025년 새 법안은 기존의 파편화된 부문별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통일된 집단소송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보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법적·계약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다수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근거로든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범위 및 법인 참여 확대:** 기존에는 주로 물질적 피해에 국한되었으나, 이제는 그 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손해(물질적, 정신적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인(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업 간(B2B) 집단소송도 가능해졌습니다.

2. 소송 제기 자격 (원고 적격성)

개인 피해자가 직접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자격을 갖춘 특정 단체만이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협회
- 승인받지 않았으나 2년 이상 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정식 등록 비영리 단체 (단, 위반 행위의 중단만을 구하는 소송에 한함)
- 대표 노동조합 및 검찰
- EU 관보에 게재된 다른 회원국의 적격 단체 (국경을 넘는 집단소송 가능)

3. 소송 절차 및 '옵트인(Opt-in)' 방식 유지

프랑스의 집단소송은 미국의 '옵트아웃(제외 신고)' 방식과 달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하는 '옵트인(참여 의사 표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주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책임 판결):** 판사가 개별 사례들을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자 집단의 기준과 손해 배상 기준을 설정합니다.
- **2단계 (보상 및 참여):** 판결 내용이 공표되면, 피해자들은 판사가 정한 기한(최소 2개월에서 최대 5년) 내에 집단에 합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제3자 소송 자금 지원 (TPLF) 명시적 허용

전문적인 조사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집단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3자에 의한 소송 자금 지원이 조건부로 허용되었습니다. 단,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자금 제공자가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소송 진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징벌적 '민사 벌금(Sanction Civile)' 도입

프랑스는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이를 대체할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민사 벌금'을 신설했습니다. 전문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하여 연속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법원은 검찰이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은 얻은 이익의 최대 2배, 법인은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벌금은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특별 공공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6. 전담 법원 지정 및 공공 등록부 신설

판결의 일관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소송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별 지정 법원(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이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잠재적 피해자들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진행 중인 집단소송 공개 국가 등록부가 신설되어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독일의 집단구제

독일의 집단구제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법적 청문권(Right to be heard)'을 엄격히 해석하여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는 미국식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위헌으로 배척해 온 대륙법계의 대표적 모델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등 대규모 피해 사건을 겪고

EU 대표소송지침(RAD)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게 되면서, 2023년 '소비자권리집행법(VDuG)'을 제정하여 제도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1. 제도의 역사적 진화 과정

- 금지청구 (**UKlaG, 2002년**): 과거에는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위법행위나 불공정 약관의 사용을 '장래를 향해 중단'시키는 금지청구 소송에 의존했습니다. 위법행위는 멈출 수 있었으나, 이미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자본시장표본소송법 (**KapMuG, 2005년**): 도이치텔레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만 7천 건의 개별 소송이 폭주하자, 자본시장 분야에 한정하여 공통 쟁점을 '표본 소송'으로 묶어 심리하는 제도를 긴급 도입했습니다.
- 모델확인소송 (**MFK, 2018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피해자들의 시효 만료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기업의 책임 유무를 '확인'받을 수는 있었으나, 최종적인 배상 명령을 내리지는 못해 소비자가 다시 이행 소송을 해야 하는 반쪽짜리 제도였습니다.
- 소비자권리집행법 (**VDuG, 2023년**):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소비자 단체가 다수의 소비자를 대리하여 직접적인 금전 지급(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소송(**Abhilfeklage**)' 제도를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2. 독일 집단 구제 제도의 4가지 주요 수단

- 부작위 소송 (**Unterlassungsklage**): 부당한 약관이나 기만적 광고 등 기업의 위법한 상업적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전통적인 형태입니다.
- 자본시장 모델 소송 (**KapMuG**): 2005년 도이치텔레콤 사건을 계기로 다수의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 분쟁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법적·사실적 쟁점을 일괄적으로 묶어 하나의 모델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 확인 소송 (**Musterfeststellungsklage**): 2018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도입되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다수의 소비자를 대신해 법적 쟁점을 확인받을 수 있지만, 실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개별 소비자가 판결을 근거로 다시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구제 소송 (**Abhilfeklage**): 2023년 10월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적격 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배상, 계약 해지, 대금 환불, 수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최초의 배상형 집단 소송입니다.

3. 새로운 '구제 소송(**Abhilfeklage**)'의 핵심 특징

2023년 도입된 구제 소송은 독일 집단 구제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광범위한 적용 범위: EU 지침이 요구하는 특정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 일반 계약 분쟁, 독점금지법 위반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모든 민사 분쟁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들의 청구 내용이 사실적, 법적으로 '동일성(**Gleichartigkeit**)'을 갖춰야 합니다.
- 엄격한 원고 적격 (적격 단체):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영리 목적으로 폼이나 개인이 아닌, 등록된 비영리 '적격 단체(**Qualified Entities**)'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소 4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리 기업으로부터 5%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옵트인(**Opt-in**) 모델: 헌법상 당사자 자치와 청문권 침해를 우려하여 미국식 옵트아웃 방식을 거부하고 '옵트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소비자는 법원의 구두

변론이 종결된 후 최대 3주까지 연방 법무부의 '집단소송 등록부'에 자신의 청구권을 등록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의 참여 허용: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직원 10인 미만 및 연 매출 200만 유로 이하의 '소기업(Microenterprises)'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간주되어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구제 소송의 3단계 진행 절차

복잡한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제 소송은 다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기본 판결 (**Abhilfegrundurteil**): 법원이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고, 소비자가 배상을 받기 위한 요건과 증빙 자료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2. 화해 협상 (**Settlement Phase**): 기본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은 양측 당사자에게 배상액 분배 등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며 화해를 유도합니다.
3. 최종 판결 (**Abhilfeendurteil**) 및 이행: 화해가 결렬되면 법원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합니다. 피고는 이 금액을 이행 기금에 납부해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신탁 관리자(**Sachwalter**)가 등록된 개별 소비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뒤 배상금을 직접 분배합니다.

네덜란드의 집단구제

네덜란드의 집단구제 제도는 유럽 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발전해 온 모델이자,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피해 사건이 집중되는 유럽 제일의 '집단소송 중심지(Litigation Magnet)'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제도는 단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1994년 금지청구(WCA) → 2005년 집단화해(WCAM) → 2020년 집단손해배상(WAMCA)이라는 3단계의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강력한 포괄적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1. 제도의 역사적 진화 (3단계 발전)

- **1단계: 집단소송법 (WCA, 1994년)** 소비자 및 공익 단체가 위법행위 중지를 구하는 '금지청구'와 위법성을 확인받는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위법성이 확인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반쪽짜리 제도였습니다.
- **2단계: 집단피해결정법 (WCAM, 2005년)** 금전적 구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해 기업과 피해자 대표 단체가 사전에 도출한 '자발적 합의(Settlement)'에 대해 법원이 승인하면 전체 피해자 집단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대형 국제 증권 사기 사건 등에서 수억 유로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처럼 피고 기업이 배상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는 구제를 강제할 수 없다는 치명적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 **3단계: 집단손해배상법 (WAMCA, 2020년)** WCA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의 동의 없이도 법원을 통해 강제적인 '집단 금전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현대적 집단구제 제도를 완성했습니다.

2. 현행 WAMCA 제도의 핵심 특징

- 모든 민사 영역 포괄: 특정 법률 위반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 환경, 프라이버시, 독점규제(카르텔), 투자자 피해 등 민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범용적으로 적용됩니다.
- 옵트아웃(**Opt-out**) 원칙의 전면 도입: 소액 다수 피해자들의 '합리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네덜란드 거주 피해자에게는 명시적으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소송에 자동 포함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관할권 충돌 우려가 있는 해외 거주자(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명시적 가입을 요구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엄격한 원고 적격 및 독점적 대표(**ER**) 지정: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피해자나 영리 로펌은 원고가 될 수 없으며, 엄격한 지배구조와 투명성 기준(**Claimcode**)을 충족하는 비영리 재단(**Stichting**)이나 사단(**Vereniging**)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여러 단체가 경합할 경우, 법원이 가장 적합한 단체 하나를 '독점적 대표 당사자(**Exclusive Representative**)'로 지정하여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 제3자 소송자금 조달(**TPLF**) 양성화 및 사법 통제: 네덜란드는 패소 시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규모 소송 비용을 대기 위해 글로벌 소송 펀드 등 외부 자금 조달에 100%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로 피해자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소송 초기부터 자금 조달 계약서를 제출받아 그 적정성과 펀드의 수익률(수수료) 상한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3. WAMCA 시행 5년의 명암과 현재의 쟁점

제도 시행 5주년을 맞은 2025년, 네덜란드 정부(WODC)의 공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WAMCA는 도입 의도와 달리 심각한 절차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 적격성 심사 단계의 '병목 현상': 소송 남용을 걸러내기 위해 만든 1심 예비 단계(적격성, 지배구조, 자금 조달 심사 등)를 피고 기업들이 항소와 재항소를 거듭하는 '지연 전술'의 방어망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 손해배상 판결 전무(0건): 이 극심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지난 5년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반 사건 중 최종적으로 확정된 집단 손해배상 판결이나 배상액 분배 단계에 도달한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이러한 절차적 마비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를 간소화하는 '이중 트랙(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법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미세 조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집단구제

이탈리아의 집단구제 제도는 전통적인 대륙법계의 헌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온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최근 2019년 및 2023년의 대개혁을 통해 '이중 트랙(**Dual Track**)' 시스템과 '늦은 옵트인(**Late Opt-in**)'이라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며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1. 옵트아웃(**Opt-out**) 배제와 헌법적 한계

이탈리아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미국식 '옵트아웃' 제도를 강력히 배척하고 '옵트인(**Opt-in**)'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탈리아 헌법 제24조 및 제111조의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나 위임 없이 타인이

임의로 소송을 주도하여 개인의 권리를 확정 짓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적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2010년 도입되었던 초기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는 패소 비용 부담을 우려한 피해자들의 자조한 참여(합리적 무관심)와 까다로운 요건 탓에 10여 년간 승소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2. 현재의 제도 구조: 이중 트랙(Dual Track) 시스템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EU의 대표소송 지침(RAD)을 수용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현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제도가 병존하는 '이중 트랙'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 일반 민사 집단소송 (2019년 개정 / 2021년 발효): 기존 소비자보호법에 있던 집단소송을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근간인 민사소송법(제840조의2)으로 이관했습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SME) 및 일반 법인 등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격상되었으며, 환경 피해, 담합 등 모든 민사적·상사적 불법행위를 포괄할 만큼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 소비자 대표소송 (2023년 신설): EU 지침(RAD) 이행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에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EU법 위반 사안(데이터 보호, 금융 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소송을 낼 수 없고, 국가의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적격 단체(예: 알트로콘수모 등)'만이 피해자의 개별 위임 없이도 독자적으로 소송을 개시할 배타적 권한을 가집니다,. 이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즉시 잠재적 소비자의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중단되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사법접근성을 극대화한 혁신적 메커니즘

이탈리아는 헌법상 옵트인을 고수해야 하는 불리함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창의적인 장치들을 고안해 냈습니다.

- 판결 결과를 보고 참여하는 '늦은 옵트인(Late Opt-in)': 이탈리아 제도의 가장 파격적인 혁신입니다. 법원이 피고 기업의 위법 행위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본안 승소 판결을 내린 직후에, 피해자들이 최장 150일 이내에 승소가 확정된 안전한 상태에서 소송단에 합류(Opt-in)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참여 기회를 부여합니다,. 피해자는 패소 비용 리스크 없이 무임승차하듯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참여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피고 기업은 재판 막바지까지 배상 총액을 예측할 수 없어 엄청난 조기 합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 '승소보수금(Compenso Premiale)':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이탈리아에서 유능한 변호사와 단체의 소송 기획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집단소송 승소 시, 법원은 피고 기업에게 본래의 피해 배상액 외에 추가로 원고 측 대리인(변호사 등)에게 배상 총액에 비례하는 막대한 '승소보수금(보너스)'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디지털 포털(PST)을 통한 온라인 옵트인: 법무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 '전자 서비스 포털(PST)'에 모든 소송 진행 상황이 투명하게 공시됩니다,. 일반 소비자는 우편이나 변호사 선임 없이 온라인 디지털 신분증(SPID)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무료로 소송(옵트인)에 간편하게 참가할 수 있어 절차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4. 제3자 소송자금 조달(TPLF) 양성화 및 주요 성과

막대한 소송 비용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기 위해, 이탈리아는 제3자 소송자금 조달(TPLF)을 법적으로 양성화하여 글로벌 소송 펀드들의 자금 유입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금 제공자의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제도적 지원과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소비자 단체인 '알트로콘수모(Altroconsumo)'는 8년의 법정 투쟁 끝에 2024년 폭스바겐(디젤게이트 사건)을 상대로 약 5,000만 유로(약 720억 원) 규모의 기념비적인 집단 보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제도가 강력한 경제적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집단구제

포르투갈의 집단구제 제도는 로마법의 '민중소송(Ação Popular)' 전통과 현대 유럽의 규제 법리가 융합된 독창적이고 강력한 사법 도구입니다. 특히 대륙법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이례적으로 전면적인 옵트아웃(Opt-out) 시스템을 일찍이 정착시켜, 현재 유럽 내 집단소송이 가장 활발하게 제기되는 3대 관할권(전체 건수의 약 25% 집중)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포르투갈 집단구제 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와 제도의 진화

- **헌법적 근거 (1976년):** 1974년 민주화 혁명 이후 제정된 헌법 제52조에 모든 시민과 단체가 공중 보건, 환경, 소비자 권리 등을 방어하기 위해 '민중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본권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개정을 통해 금지명령뿐만 아니라 피해 배상 청구권까지 헌법적 기본권으로 격상시켰습니다.
- **일반 민중소송법 (제83/95호 법률, 1995년):** 헌법을 실체화하여 제정된 법으로, 무분별한 남소를 막으면서도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변호사 성공보수를 배제하고 원고 측 소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면제해 주는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 **소비자 대표소송 특별법 (제114-A/2023호 법령, 2023년):** EU 대표소송 지침(RAD)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소비자 보호에 특화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단체의 자격을 엄격히 하고, 외부 자금 조달을 합법화했습니다.

2. 옵트아웃(Opt-out) 원칙과 예외

- **전면적 옵트아웃:** 일반 민사소송의 원칙을 깨고, 소장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소비자와 시민은 별도의 명시적 위임장이나 참여 의사가 없어도 자동으로 소송에 편입되어 판결의 기판력을 받습니다. 단,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묶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증거 조사 단계'가 종료되기 전까지 명시적으로 제외(Opt-out)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옵트인(Opt-in) 예외:** 초국경적 소송에서의 관할권 충돌을 막기 위해, 포르투갈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거주 소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적 참여 의사를 밝히는 옵트인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송 주체(원고 적격)의 이원화

- 일반 민중소송: 포르투갈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개인 시민 누구나' 직접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익 협회, 검찰청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대표소송: 소비자 보호 법령 기반의 소송에서는 개인이 단독으로 집단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투명성과 독립성 요건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적격 단체(Qualified Entities)'와 검찰청, 소비자총국(DGC)만이 제소할 권한을 독점합니다.

4. 사법접근성 강화와 남소 방지책

- 비용 면제 특권: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공익 목적으로 소송을 낸 원고 단체는 소송이 악의적이지 않은 한 초기 인지대와 수수료를 전면 면제받으며, 패소하더라도 일반 비용의 10~50%만 부담하도록 감면받습니다.
- 제3자 소송 자금 조달(TPF) 양성화: 거대 기업을 상대하기 위한 막대한 자본 조달을 위해 TPF를 합법화했습니다. 대신, 자금 조달 계약서 사본을 법원에 공증 제출하고, 펀딩 제공자의 이해상충 여부나 부당한 개입을 법원이 엄격히 심사하도록 강제하여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 미청구 배상금의 100% 공익 환원: 개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아 남은 막대한 잔여 배상금은 피고 기업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원고 측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의 60%는 '소비자 권리 증진 기금'에, 40%는 '사법관리 및 장비 연구소'로 강제 귀속되어 국가 사법 인프라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재투자됩니다.

스페인의 집단구제

1. 현행(개정 전) 집단 구제 제도의 특징

개정 법안이 도입되기 전까지 스페인의 집단 구제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 소비자 및 사용자 단체 소송: 법률에 따라 승인된 소비자 및 사용자 단체(Associations of Consumers and Users)가 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 계층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원고 소송 (Joinder of Parties):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원고가 하나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식이 이용되었습니다.
- 제한: 이 제도는 분산되어 있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개별 피해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등 대규모 집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유럽연합 지침 이행

스페인은 EU '대표 소송 지침(Directive (EU) 2020/1828)' 이행을 위해 '집단 소송 법안집단 소송 법안 (Proyecto de Ley de acciones colectivas)'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스페인 집단 구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특징 및 의미
기본 방식	옵트아웃 (Opt-Out) 원칙	스페인 거주 소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옵트아웃(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 결과에 포함)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유럽연합 내 대다수 국가가 옵트인(Opt-In) 방식을 채택하는 것과 대비되는 파격적인 선택입니다.
옵트인 예외	개별 청구액 €3,000 초과 시	법원은 개별 피해자당 청구 금액이 3,000유로(€3,000)를 초과하고, 공정한 사법 집행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옵트인(Opt-In)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주체 (적격 단체)	검찰청 및 공인된 적격 단체	공공 소비자 보호 기관, 소비자 협회 등 '적격 단체(Qualified Entities)'와 검찰청에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Legal Standing)을 부여했습니다.
소송 자금 조달	제 3 자 소송 자금 조달 허용	원고 측에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 3 자 자금 조달(Third-Party Funding)이 허용되며, 다만 법원은 이로 인한 이해 상충이나 소송 목적의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통제할 수 있습니다.